

## 2018년도 제2회 자격갱신인증 및 추가갱신인증 시행계획 공고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인증서 발행 및 관리 규칙(KCIMD-P-09) 제6조 ‘갱신인증 신청’ 및 제7조 ‘추가갱신인증 신청’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자격갱신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원 장

### 1. 대상자

#### 1.1 갱신인증(Renewal) 대상자

- (1) 인증원에서 ISO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8년 12월 31일 또는 2019년 1월 31일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 1.2 추가갱신인증(Late Renewal) 대상자

- (1) 인증원에서 ISO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이 정지된 자.
- (2) 인증원에서 ISO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갱신인증 신청자격 미 충족으로 자격이 정지된 자.

### 2. 신청자격

#### 2.1 갱신인증(Renewal) 대상자

- (1) 대상자는 최초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다음 (2)번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절차에 따라 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2) 대상자는 아래 모든 조건의 충족을 증빙해야 함.
  - 가)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자격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사례를 제출).

- 나)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유효기간 내에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수행하였음.
- 다) 자격인증 유효기간 내에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 (3) 갱신인증 대상자가 상기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술자 자격이 정지(자격인증시험 응시 등 인증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이용을 중단함)되며, 부적합사항을 충족하여 추가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4) 기술인증자가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갱신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단, 관련 문서(수료증 등)를 통해 증빙해야 함.
  - 가)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는 자기개발활동으로 10시간을 인정함. 단, 2011년 설비진단기술강습회(제10회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한하여 8시간을 인정함.
  - 나)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는 발표자에게 추가로 6시간을 인정하며, 복수의 발표를 한 경우 10시간을 인정함. 갱신 신청 시 강습회 발표 경력을 자기개발활동(강습회 및 교육훈련) 또는 자격인증 활용사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단, 공동저자에게는 인정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2.2 추가갱신인증(Late Renewal) 대상자

- (1) 대상자는 유효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2)번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추가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2) 대상자는 아래 모든 조건의 충족을 증빙해야 함.
  - 가)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추가갱신인증 신청 전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사례를 제출).
  - 나)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에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수행하였음.
  - 다)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 (3) 기술인증자가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갱신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단, 관련 문서(수료증 등)를 통해 증빙해야 함.
  - 가)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는 자기개발활동으로 10시간을 인정함. 단, 2011년 설비진단기술강습회(제10회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한하여 8시간을 인정함.
  - 나)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는 발표자에게 추가로 6시간을 인정하며, 복수의 발표를 한 경우 10시간을 인정함. 갱신 신청 시 강습회 발표 경력을 자기개발활동(강습회 및 교육훈련) 또는 자격인증 활용사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단, 공동저자에게는 인정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4)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내에 추가갱신인증을 합격하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인증카드 등을 인증원에 반납하고 최초 인증절차를 따라야 함.

## 2.3 갱신인증 유효기간

- (1) 갱신인증 :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이전 갱신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5년으로 함.
- (2)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자격인증은 정지됨(자격인증시험 응시 등 인증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이용을 중단함).
- (3) 추가갱신인증 :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의 잔여기간 중 갱신 결정일 익일로부터 부여함.

## 3. 갱신인증 신청 절차

### 3.1 접수 기간

- (1) 신청 접수 기간 : 2018. 8. 13(월), 09:00 ~ 2018. 8. 24(금), 18:00까지 인터넷 접수 분에 한함.
  - (2) 서류 보완 기간 : 2018. 8. 13(월), 09:00 ~ 2018. 9. 05(수), 18:00까지 인터넷 접수 분에 한함.
- ※ 접수 기간 외 접수 불가.
  - ※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됨.

### 3.2 신청 방법

- (1) 인증원 홈페이지([www.kci-md.or.kr](http://www.kci-md.or.kr))에서 인터넷 접수(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2) 접수마감 시각까지 갱신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수수료를 기한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자동 취소됨.
  -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건)의 경우, 가상계좌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접수 마감 시각까지 갱신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3) 갱신인증 접수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 서식은 인증원 홈페이지와 본 공고문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3.3 구비서류

- (1)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경력(업무) 증명서 1부
  - 가) 별첨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 후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사본 제출.
  - 나) 경력 증명서에는 갱신인증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 자유양식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자기개발활동(강습회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수료증 등)

※ 유효기간 내에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함.

※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 관련 교육일 경우, 교육 종류(사내교육, 외부교육 등)와 무관하게 인정됨.

(3) 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가) 자격인증 유효기간 내에 또는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활용사례를 증빙해야 함.

나) 단,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실적과 최소 7건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제출해야함.

다) 갱신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증빙자료 성격 상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등 자유양식에 자격인증 활용사례를 자세히 기입하고 해당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 3.4 갱신인증 수수료

(1) 갱신인증 수수료

구분	갱신 분야 및 영역		갱신인증 수수료
2018년도 제2회 갱신인증	ISO 18436-2 (진동진단기술자)	Category I	250,000원
		Category II	350,000원
		Category III	450,000원
	ISO 18436-4 (현장유효진단기술자)	Category I	250,000원
		Category II	350,000원
	ISO 18436-7 (열화상진단기술자)	Category I	250,000원

(2) 수수료 납부방법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홈페이지 접수 사이트 내 전자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중 택일)

### 3.5 갱신인증 수수료 환불

(1) 환불 신청기간 : 2018. 9. 11(화) 까지.

※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 불가.

(2) 환불 신청방법 : 인증원 대표메일([kci-md@kci-md.or.kr](mailto:kci-md@kci-md.or.kr))로 다음 정보를 송부.

가) 신용카드 : 신청자 성명,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 분야 및 영역, 결제일

나) 무통장입금 : 신청자 성명, 신청자 생년월일, 접수 분야 및 영역, 결제일, 환불 받을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 3.6 갱신인증 자격심의

(1) 각 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에서 접수 서류의 진위여부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수행함(접수기간 종료 후 2주일 간).

※ 심의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제시된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됨.

※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고 신청자는 향후 2년 동안 필기 시험 응시 및 자격인증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기술자 자격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격이 취소됨.

※ 갱신인증 분야 및 영역별 자격심의자

갱신인증 분야 및 영역		갱신인증 자격심의자
ISO 18436-2 (진동진단기술자)	Category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승철(포항공과대)</li> <li>• 서윤호(한국기계연구원)</li> </ul>
	Category II	
	Category III	
ISO 18436-4 (현장윤활진단기술자)	Category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호(동국대)</li> <li>• 성인하(한남대)</li> </ul>
ISO 18436-7 (열화상진단기술자)	Category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주형(인하대)</li> <li>• 김의중(인하대)</li> </ul>

※ 응시자격 심의자는 인증원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4. 합격자 발표

- (1) 발표일시 : 2018. 12. 17(월) 10:00
- (2) 발표방법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홈페이지([www.kci-md.or.kr](http://www.kci-md.or.kr))에 개별 공지.  
(합격여부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3)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일 : 2018년 1월 7일(월)
  - ※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일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 갱신인증 심의 합격자가 인증서 발송일 전에 인증심의 합격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대표메일([kci-md@kci-md.or.kr](mailto:kci-md@kci-md.or.kr))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단, 확인서는 인증서의 효력은 없으며 인증서 수령 전까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5. 불만 및 이의 처리

- (1)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만 또는 이의제기자의 신분과 연락처, 불만 및 이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 또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의 불편 및 건의사항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인증원에 제출해야 함.
  - 가) 이의 제기 :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인증 또는 훈련기관 승인과 관련하여 인증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나) 불만 : 개인 또는 조직이 인증원 또는 인증원이 인증한 자격자나 승인된 훈련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증원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



## 경력(업무)증명서 작성방법

- ① 성 명 : 한글로 기재하되 정자로 작성한다.
- ②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③ 재직기간 : 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④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⑤ 담당업무내용 : 자격인증기간 또는 추가갱신이증 신청 전까지 담당한 업무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⑥ 갱신분야 및 영역 : 갱신하고자 하는 분야 및 영역에 ○ 표기를 한다.
- ⑦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증명을 위한 성명을 기록한 후 날인을 하여야 한다.

※ 경력(업무)증명서에 담당업무의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 자유양식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하십시오.